

#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관광과

제정 2020 · 12 · 29 조례 제1670호  
일부개정 2024 · 9 · 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천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분야의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공예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 분야)** 명장의 선정분야는 왕골,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선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 9 · 30>

1. 3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현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 상 50세 이상인 자
  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 ·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 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

##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 또는 관내 공예 산업 관련 기업체·단체·조합의 장 중 어느 한 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며,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예·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으며 명장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여 시 홍보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의 공예품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공개금지 등)** 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